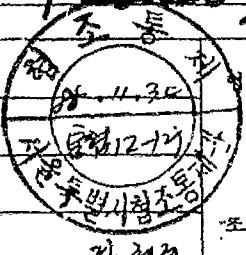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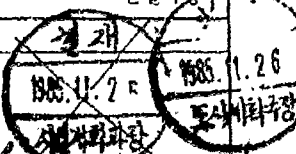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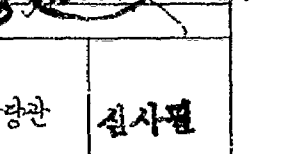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 30310-616		(전화번호 731-6349)	선결가정 국장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2. 11					
보존연한	영구					
보조 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시설계획과장	32				
	가로계획과장	32				
거인책임자	김영환	82. 11	장	조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제목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11/26
제 1 안	내부결재					
<p>1. 우리시 관내 마포구 성산동 360 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우리시 제 4 차 도시계획 위원회 (81. 12. 17) 에 상정심의가 결정될 사항이나, 부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토목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결정을 보류 (82. 11. 13 방청) 한바 있으며</p> <p>2. 금번 토목공사가 완료 (82. 11. 9) 되었기 기 심의가결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고시 및 시행코자 합니다.</p>						
제 2 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로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1항 1호 4목주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 도시  
 정비과와 시인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8. //

서울특별시

- 시설조사 -

구분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기정	주차장	마포구 성산동 360 일대	55 914	
변경	"	"	0	해제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상략)

제 3 안

수 실 : 건설부장관

제 목 : 같 음

1.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 함이다

첨부: 고시문서본 및 도면 각 1부

제 4 안

수 실 : 총무처장관 (시: 광복동)

발신 : 시(국)장

제 목 : 관(시)보 게재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의뢰 함이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다. 합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 12 조

라. 게재방법 : 별첨 고시문

첨부: 고시문서본 2(1) 부

제 5 안

수 실 : 마포구청장 (도시정비과장)



제 목 : 갈 음

1. 도정 30자 4-1200호 (상. 11. 8) 와 관련 귀구관내 성산동 360 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거장)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라기 관계도면 정리하여 도시계획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2. 기 시달된 시설 442-441 (상. 11. 13) 호와 관련 본지역 대하여 자용차 정비업소 이외 타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용도지역 상은 상업지역 "(자용차 정비업소 용도에 관한)" 으로 표기토록하여 정비업소의 전용을 방지토록 할 것

첨부: 의사문서본 및 도면 각 1부

제 6 안

수 신 : 유수 2과장

발신 : 과장

제 목 : 갈 음

1. 우리시 관내 마포구 성산동 360 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거장)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해제) 되었기 통보라기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변경 결정 지역의 정비업소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관할구청에게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시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자용차 정비업소 용도에 관한)" 으로 표기토록 지시 하였으며 본지역 계속 정비업소 단지로 그 기능이 유지 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첨부: 대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제 7 안

수 신 : 강남구 서초동 84-4 시범발전 5이관 관내과장과 사업 진흥회 이원화.

제 목 : 도시계획시설 (주거장) 변경 결정 통보

1. 귀하가 82. 10. 6 우리시에 제출하신 마포구 성산동 360. 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주거장) 에 대한 변경 결정 (해제) 을 본지역 토목공사가 완료 될때까지. 모루하여 별다른 사항에 대하여. 공변 (상. 11. 9) 토목공사가

원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해제)을 하였고 동지하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문사본 및 도면 각 1부 -공-



城山洞

성산제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해제)  
A = 55.914 m<sup>2</sup>

용수정화처리장

마포구청  
공용의청사

성산대교

여객자동차승차장

성산대교

